

문책사항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삼성생명보험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 6. 2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설계사	업무정지 90일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: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

- 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- 삼성생명보험(주)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1.12.12. ㉠종신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乙에게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 방법으로 총 64,116,000원의 특별이익(보험료 대납)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8조 제4호